

절편녹용 수입 강요하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절편녹용 수입을 끈질기게 강요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뉴경제실무회의에서 절편녹용 수입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국내 양육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 본회는 정면으로 뉴질랜드대사관에 절편녹용 수입의 부당성을 지적한 성명서를 보내고 국내 양육인의 주장이 묵살될 경우 대(對)뉴질랜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양육 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와 뉴질랜드 양육위원회 간에 오고간 서신을 공개한다. (편집자)

□ 본회 성명서

뉴질랜드 정부는 절편녹용 수입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뉴질랜드 정부가 1998년부터 우리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해 온 절편녹용 수입 강요를 오는 10월 1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뉴 경제실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려는 움직임에 우리 1만 5천 양육인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이 묵살될 경우 생존권 수호차원의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1. 한국양육 40여년동안 우리는 자구 노력으로 사슴사육농가 1만 5천호, 사슴사육두수 20만두, 건녹용 4만kg을 생산하는 세계 제4위 양육국으로 부상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국제무역 및 통상마찰을 구실로 한국양육을 압살한 절편녹용 수입을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오만한 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설립된 「뉴질랜드 양육위원회」는 공장주, 가공업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현재와 같이 절편녹용 수입 강요 등 정부차원의 막강한 로비를 우리 정부에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WTO정신에 위배되는 「뉴질랜드 양육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3.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수입 강요는 녹용을 수출하는 국가간 형평성에 위배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외산 절편녹용 전면 개방이 불가피해져 녹용 유통 대혼란을 야기하므로 절대 반대한다.

4. 녹용을 절편하여 유통시킬 경우 사슴의 품종과 녹용의 품질을 감별할 수 없어 가짜 녹용인 순록뿔이 대량 유통되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암·수 공히 뿔이 나오는 순록은 현재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지역에 대량 서식되어 방대한 양의 뿔(가짜 녹용)을 생산하여 재고로 남아 있다.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할 경우 즉시 국내에 부정 유통될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사실로 뉴질랜드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녹용은 국가검증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지(全枝)상태에서 관능 및 이화학적(회분함량) 검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하고 있는데, 절편 포장된 수십만개의 녹용이 수입될 경우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품질시비와 유통질서 문란은 물론 한약재(녹용) 규격제도가 실종되어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

6. 자국에서는 소비되지 않아 쓰레기로 유상

처리해 온 녹용을 오직 대한민국에 수출하려고 혈안이 된 뉴질랜드는 더 이상 국내 양록농가를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녹용 수입총량의 65.8%, 생녹용 수입총량의 78.4%를 수출하여 국내 녹용시장을 독점하는 뉴질랜드가 절편녹용까지 수입을 강요하는 것은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산 녹용을 물리치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양록을 압살하여 한국녹용 내수량을 전량 자국산으로 공급하려는 불순한 음모로 간주한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녹용 수출국간 호혜평등에 어긋나고 국내 법령을 무시한 절편녹용 수입 강요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계속해서 절편녹용 수입을 강요할 경우 우리는 국내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뉴질랜드 녹용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며,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우리 1만 5천 양록인은 생존권 수호차원의 대뉴질랜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뉴질랜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0년 10월 5일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 본회 성명서에 대한 뉴질랜드 양록 위원회(GIB)의 서신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와의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관련 토론에 관한 귀 협회의 10월 5일자 성명서를 전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작년에 저희 회장이 귀하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의논드린 바 있습니다.

귀 협회가 한국의 양록 산업을 대표하듯이 저희 뉴질랜드 GIB도 뉴질랜드 사슴 산업의

미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400,000kg의 녹용을 생산하는 2백만 마리의 사슴을 기르는 4천 5백명의 양록자들이 있으며 15군데 정도의 가공 및 수출회사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뉴질랜드 양록산업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다른 수백만 회사와 개인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의도는 한국 양록인들의 장래를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GIB의 활동이 귀 협회의 회원을 포함한 모든 녹용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1. 저희는 지금까지 한의사들과 약사,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녹용을 홍보하기 위해 오십만 뉴질랜드 달러를 썼습니다.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러시아의 녹용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목표는 단지 뉴질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녹용 자체의 시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생산이 늘어나는 때에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놓고 싸우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녹용의 전체적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 뉴질랜드 정부와 업계는 또한 녹용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 일년간 대략 일백만 뉴질랜드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소비자들, 특히 젊은 계층의 녹용에 대한 수용도를 증진시킬 것이며 모든 녹용 생산자들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과학적 부분은 귀 협회의 회원들에게도 궁극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 게다가 현재 저희 마케팅 초점은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 이외의, 특히 미국과 같은 서구나라의 자연 건강상품 시장에서 뉴질랜드 녹용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차 보고서를 보시면 저희가 미국에서 하는 홍보활동이 한국에서 보다 최소한 두

배이상 크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든 녹용 생산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뉴질랜드 양육인과 뉴질랜드 업계 참여자에 의해 투자되고 있는 저희 협회의 활동들이 귀 협회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회장이 지난 방문시 귀 협회에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귀 협회와 홍보, 품질, 과학 등에서 보다 친밀히 협조하여, 축소되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을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규모를 늘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제의를 받아들여 서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뉴질랜드 업계에서 왜 절편녹용 허용을 요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지 녹용만 허용되기 때문에 일부 뉴질랜드 녹용이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런 둔갑 판매가 가능한 이유는 전지 상태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원산지는 일단 가공되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믿고 사는 소비자들 이 터무니없는 값을 지불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산 제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좋은 품질에 대한 마땅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업계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절편 녹용의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팔고 있는 제품이 보장된 품질을 지니고 뉴질랜드에서 나온 것임을 진실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순록뿔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한국 식약청에 순록뿔을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DNA실험법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식약청이 수입 절편과 국내시장의 녹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검사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수입 절편 녹용팩을 일일이 모두 검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랜덤(무작위 표본)검사를 사용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정 횟수가 되면 해당 회사나 국가에서 더 이상 절편 녹용을 수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제품검사를 할 때 실시하고 있듯이 이 방법은 녹용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절편 녹용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는데도 한국에는 다량의 순록뿔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록뿔이 중국이나 홍콩 등의 제3국에서 합법적인 절편녹용과 섞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해서 수출국에서부터 직접 관리하에 들어오게 되면 불법 수입을 적발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3. 아마도 우리 양측이 순록뿔 수입 방지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제품이 한국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귀 협회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십시오.

저희는 부당하고 WTO정신에 어긋난 활동을 하기 보다는 국제 무역상의 합당한 규칙을 따르려 합니다.

요약하자면,

1. 우리는 한국 양육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활동이 귀 협회의 회원들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준다고 믿으며 귀 협회와 녹용의 홍보, 품질, 무역의 투명성(특히 순록에 대해)을 위해 보다 긴밀히 공조하고자 합니다.

2. 절편녹용의 허용은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녹용의 양이 늘어나리라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비자에게까지 진실한 표시를 전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뉴질랜드나 뉴질랜드 녹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전에 부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하여) 저희 뉴질랜드 GIB와 먼저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반대운동이 모든 녹용 생산자들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녹용시장을 보다 확대하고 소비자들을 위해 무역의 투명성과 녹용의 품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을 기다리며 서로 보다 건설적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0년 10월 10일
뉴질랜드 양록위원회

□ 뉴질랜드 양록위원회의 절편녹용 관련 서신에 대한 본회 답신

○ GIB주장에 대한 본회 의견

1. 본회와 뉴질랜드 양록위원회(GIB)의 차이

한국양록협회는 사슴을 직접 사육하는 순수 생산자 농민단체인 반면 GIB는 농장주, 가공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주도 단체이다. GIB가 정부에 의해 설립된 단체이다 보니 직접 한국 정부에 절편녹용 수입 허용을 줄기차게 강요하고 있다고 본다. 만약 한국정부에 의해 「한국양록위원회」가 설립되어 녹용수매 →가공→마케팅 등에 나선다면 GIB는 이해할 수 있겠는가?

2. GIB의 녹용 홍보비 지출과 전체 녹용 수요

증대 주장에 대해

국내 한의사, 약사, 소비자에 대한 녹용 홍보비 지출은 뉴질랜드 녹용 판촉을 위한 홍보였을 뿐, 전체 녹용시장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보며 녹용 홍보로 인한 반사이익은 뉴질랜드산 녹용 수출증대(외산 수입량의 70%)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국산 녹용의 수요 급감 및 판매난을 가속화시켜 한국 양록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녹용 수요증대를 위한 홍보에 앞서 다른 소비시장 개척과 아울러 사슴사육 두수를 적정선으로 감축하여 세계 녹용수급 안정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3. GIB의 연구활동이 본회 회원들에게 혜택과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뉴질랜드의 사슴 및 녹용에 대한 연구는 뉴질랜드산 녹용 수출 물량확대에 기여했을 것이나 본회 회원들에게 혜택과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는 사슴의 품종(레드디어 제외), 먹이, 사양관리, 기후 등이 달라 뉴질랜드의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양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GIB의 절편녹용 허용 요구 이유에 대해

전지녹용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없어 뉴질랜드 녹용이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되고 품질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절편녹용 수입허용 이유라고 밝혔는데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국내법상 녹용은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며 전지녹용도 당연히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외산 녹용은 전지상태에서 수입되어 관능검사, 이화학적검사(회분함량)를 거쳐 규격품 제조업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한 후 유통되는데 왜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가? 오히려 절편녹용이 수입될 경우 포장만 바꾸면 얼마든지 원산지 둔갑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 녹용이 중국산, 러시아산으로

둔갑되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려하면서 절편녹용 수입이 허용될 경우 순록뿔 불법유통의 문제점은 왜 우려하지 않는가? 뉴질랜드 녹용이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어 적발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둔갑은 우리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5. 순록뿔 확인 가능한 DNA실험법 제공에 대해

절편녹용 수입 허용을 전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국내에 유통되다 적발된 순록뿔은 중국,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온 밀수품이다. 순록뿔 불법유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절편녹용 수입 허용은 있을 수 없다.

6. GIB가 WTO정신에 어긋난 활동을 하기 보다 국제 무역상의 합당한 규칙을 따르려 한다는데 대해

녹용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이다. 과연 이들 나라에도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기로 일본은 자기를 규정에 의해 중국의 사슴에서 생산된 매화록, 마록 녹용만을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일본의 규정을 뜯어고쳐서라도 뉴질랜드 녹용을 사용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가? 우리나라도 전지녹용만을 녹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왜 절편녹용 수입을 강요하는가?

세계 녹용 생산량의 80%를 소비하는 한국의 녹용규정을 무시하는 뉴질랜드의 행위에 우리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절편녹용 수입반대 이유

1. 한국법률을 무시한 초법적 주장

한국에서 유통하는 녹용은 한국의 약사법, 한약 규격집,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입, 가공, 유통하는 한약재의 일종으로서 기원(정의) 및 성상에 적합해야 한다.

녹용을 약재로 사용해 온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녹용의 규격을 전지 건녹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따라서 한국에 녹용을 수출하려면 한국의 녹용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녹용은 개방품목이 아닌데 WTO제소 운운하며 녹용규격에 맞지 않는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하라는 고압적 자세는 녹용을 파는 수출국의 위치를 망각한 처사로서 국제무역 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 한국법에 따라 수출해야 할 것이다.

2. 절편녹용 수입 요구의 부당성

GIB는 절편녹용 수입 허용 이유로 첫째, 전지녹용에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없어 뉴질랜드 녹용이 중국이나 러시아산으로 둔갑하고 둘째, 가공되면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어 이를 사는 소비자에 부담을 주며 셋째, 뉴질랜드 녹용의 품질보장 때문이라 하나, 한국은 1995년부터 품질표시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원산지 변조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뉴질랜드 녹용 품질을 숙지하고 있어 중국산 매화용, 러시아산 마록용과의 혼돈 또는 산지 변조가 불가능 함에도 자국산 품질보증이란 이유는 논리적 모순이며 억지 주장이다.

3. 녹용수급 불균형 심화

한국 내수 한약재(녹용) 전량이 값싼 외산으로 충당하며 외산중 70%가 뉴질랜드 적녹용임에도 녹용품질보증이란 이유로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할 경우 주요 녹용수출국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물량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특정국(뉴질랜드)의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할 수 없지 않은가?

4. 품질관리 부실로 녹용 신뢰도 저하

현행(전지) 규격제도에서도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절편한 녹용을 포장하여 수입했을 때, 유사품 식별이 불가능하고 상중하대 부위 판별 및 회분함량 검사 등의 품질 부실관리로 인하여 녹용 신뢰도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5. 한국양록 기반 붕괴 초래

①한국은 세계굴지의 양록국인 동시에 세계 녹용 생산량의 80%를 소비하는 녹용소비 대국이지만, 연간 15만kg을 소비하는 한의약시장을 외산녹용에 빼앗기고 내수량의 20%에 불과한 국산녹용의 판매난을 겪고 있는 한국양록인의 뼈아픈 고통과 괴로운 심정을 역지사지(易地思之)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는가?

②한국양록은 주육부육(主茸副肉)의 집약사육(集約飼育)이고 뉴질랜드 양록은 주육부용(主肉副茸)의 방목사육(放牧飼育)이기 때문에 한국 녹용은 생산비가 높은 반면, 뉴질랜드 녹용은 생산비가 한국의 10분의 1도 못된다. 한국양록은 연간 10~15%의 사슴을 도살하나 뉴질랜드 양록은 육일승천(旭日昇天)격으로 발전, 170만마리의 사슴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양록국으로 발전하여 한국 내수량의 50%를 석권한 양록 최혜국이다. 그럼에도 경쟁력 부재로 한약재 시장을 빼앗기고 생녹용 판매난을 겪고 있는 국산 생녹용 시장에 뉴질랜드

산 생녹용까지 수출하여 생녹용 시장의 40%를 잠식해 버린 뉴질랜드가 아닌가?

③내외산 수급실정이 이러함에도 뉴질랜드산 절편녹용이 수입될 경우 한의약업소 공급가격은 현재보다 30%이상 하락하여 국산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④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양록을 고사지경(枯死之境)에 이르게 하고, 그도 모자라 절편녹용까지 수출하여 한국양록을 압사(壓死)시키고 녹용시장을 송두리채 독점하려는 흉계에 한국 양록인은 치를 떨며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⑤이것이 뉴질랜드의 녹용수출 실상임에도 GIB가 「녹용홍보 및 과학화 노력이 한국 양록인에 혜택 ...」운운한 망상(妄想)과 망언(妄言)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한국양록과 뉴질랜드 양록인이 공존공영하는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자세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1999년 10월 뉴질랜드 양록위원회 위원장, 마케팅 팀장, 주한 상무관 일행이 본회 방문시 본회에서 요구한 첫째 : 절편녹용 수입 요구의 철회, 둘째 : 생녹용 수출 중단, 셋째 : 건녹용 수출가 현실화 등을 이행하기 바란다.

2000년 11월 8일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공 지 사 항

본회 제27년차 정기총회가 2001년 1월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제14대 선거직 임원 선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14대 회장 선거 공고를 선거 15일전 본회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보가 격월로 발행되고, 제13대 임원 임기가 2001년 1월말에 완료됨에 따라 부득이 2001년 1월중순 본회 건물에 게시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총회에 대의원은 대리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정관 제19조(결의권의 대리) 삭제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